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지역 거점기관 지정 근거 마련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54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지역 거점기관 지정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1. 타 입법례	8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나. 제 출 일 : 2025. 8. 19.

다. 회부연월일 : 2025.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관산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지역거점기관 지정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한류산업등 진흥 관련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실시 근거 마련 및 지역거점기관 지정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거점기관 간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② (생략) <신설>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실시 2. 일자리 연계 지원 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현행	개정안
<신설>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한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제작 시설, 유통 기반 구축, 기업 육성 등을 지역 거점기관 또는 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제4조¹⁾, 제10조²⁾, 제15조³⁾, 제20조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⁵⁾ 등을 통해 한류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류산업진흥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류사업자 유치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류사업자⁶⁾가 아닌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현재 지역 특화 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거점기관이 있으나

-
- 1)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4)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5)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사업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제3호 생략)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 또는 한류연관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지역 거점기관 현황	
지역	지역 거점기관
부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광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울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기	경기콘텐츠진흥원
강원	강원문화재단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북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주	제주콘텐츠진흥원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제공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 관련 지역 일자리 발굴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일자리 제공 지원과 지역별 거점기관 지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만 이미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제20조제3항제1호는 중복 규정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타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0385호)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 로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9990호)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20494호)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를 지정할 수 있다.